

## 한두환 수의사 변호사의 법률칼럼 - 수의사의 생활법률 (21)

### 동물병원의 설립 주체

한 두 환  
관악법률사무소  
변호사  
today—we@hanmail.net



김명의 수의사는 수년간 고용수의사로서 다양한 경력을 쌓고, 자신의 [명의동물병원]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다. 갈수록 대형화하는 동물병원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김명의 수의사는 많은 돈이 들더라도 [명의동물병원]을 대형 동물병원으로 설립하려고 한다. 마침 수의사는 아니지만 동물병원업에 관심이 많던 이전주씨가 [명의동물병원] 설립에 5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공동 경영을 하자고 제안했다.

[명의동물병원]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자신에게 지급해달라는 것이다. 김명의 수의사 역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전주씨와 공동 경영을 한다면 수익의 일부를 이전주씨에게 나눠주더라도 성공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명의 수의사는 이전주씨와 더불어 [명의동물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을까?

갈수록 대형화 되어가는 동물병원의 운영 추세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대형 동물병원의 많은 인력과 넓은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자금 역시 수의사 개인이 부담하기는 갈수

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운영자금을 지원해줄 투자자는 수의사 입장에서는 뿌리치기 힘든 제안이 될 수 있다.

#### 수의사법에서 인정하는 동물병원 개설 주체

수의사법 제17조 제2항은 동물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동물진료법인) (4) 수의과대학 (5) 기타 비영리법인이 해당한다.

김명의 수의사는 당연히 수의사로서 동물병원 설립 주체가 되므로 [명의동물병원]을 설립하는 데 문제가 없다. 반면 이전주씨는 수의사가 아니므로, 동물진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만일 이전주씨가 동물진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면 그 법인을 통해 [명의동물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이전주씨의 법인 설립 여부

##### 가. 동물진료법인의 설립 여부

수의사법은 2013년에 동물진료법인의 설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수의사법 제22조의2는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사무소의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2조의4는 동물진료법인은 민법의 재단법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물진료법인에 적용되는 재단법인의 의미가 중요하다. 재단법인의 성격 및 권리 범위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의 운영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선, 법인이란 비록 자연인은 아니지만 사회적 활동을 하는 주체로서 법률이 그 실체를 인정하는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사람과 동일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다.

법인은 그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도 있으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도 있다.

영리법인이란 그 법인을 통해 이익을 남기고, 법인을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대표적으로 주식회사를 들 수 있다. 반면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영리가 목적이 아니므로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별개로,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서 법인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변동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사단법인은 존속한다. 반면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된 재산을 법인으로 보는 것으로, 법인을 구성하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한 재산이지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 특징이다. 즉, 재단법인은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나누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은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을 법인을 설립한 구성원들에게 나누지 않는다.

이전주씨는 [명의동물병원]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법인을 설립하면 그 법인이 얻은 수익을 설립자인 이전주씨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전주씨가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물진료법인은 재단법인이 되어야 하고, 재단법인은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명의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설립자인 이전주씨에게 분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전주씨는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해서는 수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할 실익이 없는 것이다.

####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영리법인은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을 법인을 설립한 사람에게 분배할 수 없다. 더욱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의 목적과 재원 등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 또는 중앙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전주씨는 [명의동물병원]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것을 기

대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비영리법인을 통해서는 [명의동물병원]에서 얻은 수익을 가져갈 수 없을뿐더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해당 관청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허가를 얻기도 어렵다.

#### 공동운영인지 여부의 실질적 판단

이와 같이 이전주씨가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명의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전주씨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명의동물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가령 이전주씨가 김명의 수의사에게 5억원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다거나, 이전주씨가 [명의동물병원]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매달 일정 비율의 수익을 인센티브로 받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아닌 자의 동물병원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물병원의 운영 여부는 서류상의 명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물병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전주씨가 김명의 수의사에게 5억원을 대출해주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명의동물병원]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대출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주씨가 매달 받는 금액은 [명의동물병원]이 수익이 발생해 있는지 여부, 수익이 발생했다면 얼마나 되는지와 무관하게 매달 일정해야만 한다. 또한 이전주씨가 [명의동물병원]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일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가 아니라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아야 한다.

만일 이에 위반될 시에는 이전주씨가 얻는 수익의 명목이 대출이자 또는 인센티브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명의동물병원]에 대한 공동운영으로 인정된다.

#### 수의사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해야

이전주씨가 [명의동물병원]에 설립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이는 수의사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해 동물병원이 설립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에 의한 결과이다. 이 수의사법 개정은 수의사회가 수년간 많은 노력을 해온 끝에 얻은 결과였다.

동물병원의 설립에 많은 자금이 필요해지고 있지만 그 해결방안은 수의사들만의 공동운영 등 수의사 내부에서 찾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